조합 · 업계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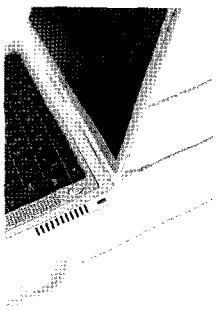

- (주)산성피앤씨, (주)동주 안산공장 인수
- 中企 적합업종 심사 품목 230건으로 정리
- 공정협약,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효과'
-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 제제 강화 안내
-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불합리 해소 촉구
- 대기업 실질지배 1천개사 中企 제외
- MRO신규영업 중단, 사업조정 합의 아니다.
- [KTV 쟁점토론-터놓고말합시다] 대기업, 중소업종 진출 확대, 어떻게 볼 것인가?
- [MBC뉴스데스크] 대기업 '문어발 사업확장'··영세업자 설 곳 없다
- 2011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개최
- 국내외판로 중기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 추진
- ㈜제미스코, 일본의 유수업체인 교와(協和)단보루에 자동가이드(WACS)와 롤 자동 센터링 장치(ZRC) 성공리에 설치

(주)산성피앤씨, (주)동주 안산공장 인수

(주)산성피앤씨(대표이사 김진구)가 (주)동주(대표이사 조병두) 안산공장을 99억 3천만원에 인수하였다고 5월 31일자로 발표하였다. 골판지상자 생산능력 증대 목적으로 인수한 동주 안산공장은 부지면적 9,939.7㎡, 건물면적 7,388.9㎡으로 이를 활용함으로서 그 동안 협소한 기존 공장의 물류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산성피앤씨는 기존 공장의 공간 부족으로 상자 가공라인을 인근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활용하여 왔었는데,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기업인 (주)동주가 충남 천안지역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전격 인수하게 된 것이다. 동주 안산공장의 취득예정일은 8월 31일 이다.

아울러 (주)동주는 천안시 입장면 지역에 부지면적 1만 8천평 규모의 단지에 NIWA 코르게이터와 골판지상자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8월경부터 본격 가동하게 될 것으로 알려 졌다.

中企 적합업종 심사 품목 230건으로 정리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 품목 선정과 관련해 접수한 234개 품목 중 4건을 반려해 심사 대상을 230개 품목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 적합업종 · 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는 지난 2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신청 기업이 연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일반 제조업이 아닌 품목 등 4건을 추려내 반려 조치했다. 이는 중기 적합업종 신청 조건이 5개 이상 기업의 연명을 받아야 하고 업종도 일반 제조업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제외된 품목은 LCD편광필름, 계란 및 새알 가공품, 콩나물 재배포장,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230개 품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벌여 8~9월에는 중기 적합업종 ·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전담 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사자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능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골판지포장조합(이사장 오진수)도 지난 5월 27일(금) 동반성장위원회를 찾아 "골판지 상자"의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제출했다.

공정협약,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효과'

하도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보다 하도급 거래에서 훨씬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협약 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1천개 하도급 수급사업자(협약 체결 500개사, 미체결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협약체결기업과 미체결 기업의 공정성 비교'라는 보고서로 공개했다. 공정위는 2009년 개발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모델'에 따라 하도급 계약체결, 계약이행, 상생협력 등 3개 부문에서 계약업체 선정, 하도급대금지급, 자금 지원방법 및 이행 등 11개 세부 측정지표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해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시장전체의 공정성 종합지수'는 77.4점으로 나타났으며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79.7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75.3점으로 평가됐다. 협약체결 원사업자가 미체결 원사업자보다 4.4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 미체결 원사업자의 공정성 종합지수 격차는 하도급 계약체결(0.3점)이나 상생협력(0.2점)보다 하도급 계약이행 단계의 공정성에서 크게(3.9점) 벌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 · 수리업의 공정성 종합지수가 78.3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77.1점, 용역서비스업 75.5점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의 업종별 공정성 종합지수는 용역서비스업 81.5점, 제조 · 수리업 81.2점, 건설업 78.4점이었으나 협약 미체결 원사업자의 종합지수는 제조 · 수리업 76.8점, 건설업 74.4점, 용역서비스업 69.2점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협약 체결 원사업자와 미체결 원사업자의 업종별 공정성 평가지수 차이는 건설업이 4.0점으로 가장 적었고, 제조 · 수리업 4.4점이었으나 용역서비스업은 12.3점이나 됐다.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 제제 강화 안내

정부는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3년+3년, 또는 4년10개월)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금년부터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1. 7. 1(금)부터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에 따라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표〉 불법체류자 적발 관련

구분	내 용	제제 내용
1	업체가 시정기일내에 불법 체류자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제제 없이 종결
2	업체가 시정기일내에 시정하지 않은 후 3년 이내 재 적발되는 경우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	업체가 고용제한(재 적발) 상태에서 재차 적발되는 경우	2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불합리 해소 촉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3월 29일 개정 공포되고,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00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기준으로 15/100이상 상승한 경우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 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3/1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의 조정 기한은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된 경우에만 조정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조합은 조정 신청권 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조정 협상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지상자 제품은 원재료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15% 인상된 후 3개월 이후에나 납품단가 연동 반영을 협상개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열악한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조

건임을 밝히고 원재료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재료 비중이 10%일 경우 기존대로 15%를 적용하고, 원재료 비중이 40%일 경우 12%, 60% 이상일 경우 8% 인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골판지포장업계 2010년도 주요기업(상위 20개사) 평균 영업이익율 4.8%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원재료 60% 비중시 15%의 가격 인상은 매출 기준 9%의 손실이 발생되며, 원재료 점유비 60%의 제품일 경우 손익분기점인 8%의 가격인상 시점에서 반영되어야 합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리 골판지포장조합은 이러한 입장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공정위와 청와대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난 6월 10일 우리조합 오진수 이사장, 주물조합 서병문 이사장 등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중소제조업계의 입장을 설명한바 있다.

대기업 실질지배 1천개사 中企 제외

다음달부터 현재 등록된 중소기업 중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업체 1천여개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7일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체 1천63곳의 예비명단을 공표하고 20일간 해당기업과 제3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명단을 다음달 1일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비기업 명단은 관계회사 제도 규정과 매출액, 지분관계 등을 파악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 범위 확인의 편의를 위해 발표한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올 1월부터 시행된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 · 매출액 · 자본금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자 200명인 A기업의 주식 30%를 근로자 800명인 B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 A기업의 근로자 수는 기존 200명에 240명(B기업 근로자 수의 30%)을 합한 440명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A기업은 이제까지 중소기업에 포함됐지만, 관계회사제도 적용 후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기청은 이 제도를 적용한 결과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곳이 모두 1천63곳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 광업이 42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도매 및 소매업 136개사, 부동산 및 임대업이 105개사 등 순이었다. 이중 제조업 · 광업의 경우 평균 자산총액은 787억원, 매출액은 800억원, 자본금은 179억원, 상시근로자수는 146명이지만 관련기업과 합산시 자산총액은 1조1368억원, 매출액은 4862억원, 자본금은 1553억원, 상시근로자수는 710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예비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고시 이후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기업을 분할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등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제외기업으로 최종 확정되면 이 회사들은 앞으로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정된 정부지원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수 중소업체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RO신규영업 중단, 사업조정 합의 아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소모성자재사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용재협회와 한국베어링판매협회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결과가 6월 3일 나올 예정이다. 이 조정을 앞두고 삼성과 엘지그룹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모색 등 획기적인 결과라며 기존 계열사 및 1차 협력사 위주의 사업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골판지 상자 등 중소제조업계의 물품은 대부분 1차 협력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중기청의 사업 조정결과는 산업용재와 베어링판매업계만의 문제이지만 자칫 중소기업계 전체가 받아들이는 결과로 오도되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의 김진무 전무이사는 "사업조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한들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업조정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정결론을 합의치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 했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사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MRO에 대한 사업조정을 추진키로 결의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략을 수정해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방식으로 접근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산업용재업계와 베어링판매업계는 삼성 엘지그룹의 일방적인 발표이며 사업조정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한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골판지포장조합의 지적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약속하였다.

[KTV 쟁점토론-터놓고말합시다]

대기업, 중소업종 진출 확대, 어떻게 볼 것인가?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 패널로 참석하여 업계의견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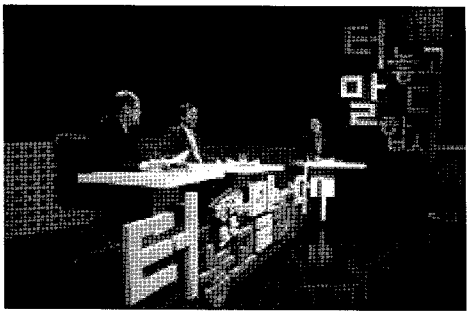

KTV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및 국정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전문적인 방송으로써, 지난 2011. 5. 13(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위해서 쟁점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를 비롯하여 4개 조합이 패널로 참석하여 업계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토론의 동영상 URL(인터넷주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RL : mms://vod.ktv.go.kr/ktv/talk/talk_20110513_2030_00.wmv

[MBC뉴스데스크]

대기업 '문어발 사업확장'‥영세업자 설 곳 없다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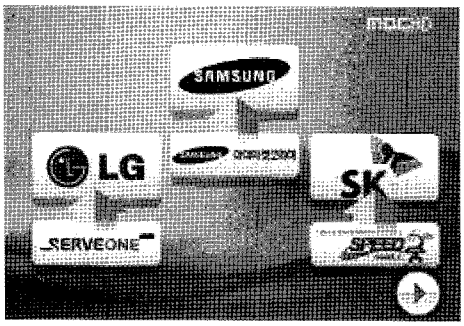

지난 2011. 5. 10(화) MBC뉴스데스크에서는 "대기업 문어발 사업확장.. 영세업자 설 곳 없다"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옛날 우리 농부들은 까치밥이라도 남겨서 겨우내 동물을 먹여 살렸는데, 대기업 재벌들은 그 조차도 안남기고 자기가 다 먹겠다는 거거든요." 라며 대기업의 횡포를 거론하였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의 URL(인터넷주소)를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RL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46516_5780.html

2011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개최

국제포장전시회인 KOREA PACK 2011이 23개국 600개 기업이 참가하는 가운데 지난 6. 14(화)부터 17(금)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KOREA PACK 2011은 포장재료와 포장기계를 중심으로 포장가공기계, 식품, 제약, 화장품 생산기계, 포장디자인, 물류기기 및 시스템과 기타 포장 관련 부자재 등 포장과 관련한 전 분야의 최신 제품, 기술, 서비스를 전시하고 있다.

이번 KOREA PACK 2011의 골판지포장산업 특별전시관에는 "태림포장공업(주)"이 단독으로 참여하였다. 태림포장공업(주)(대표이사 정상문)은 이번 전시회에 골판지로 만든 테이블, 의자, 8각상자, 종이지관, 골판지 그림 등을 전시함으로써 다채로운 골판지포장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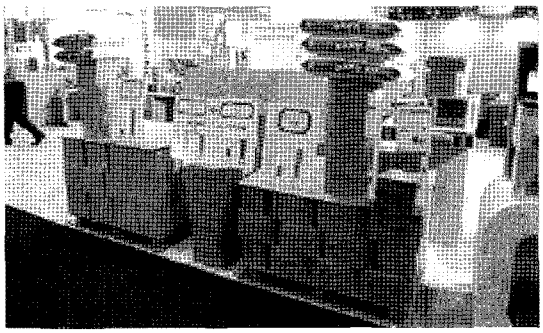

국내외판로 중기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 추진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의 불법행위 방지, 제도 운영상의 공정성 · 전문성 강화, 직접생산 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최근 직접생산 확인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직접생산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혼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직접생산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한 "확인기준 상세화", "모니터링 강화", "실태조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제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원 역량 강화", "수수료 부과제도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문별 직접생산 확인제도 추진 배경과 개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세화한다.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간 의견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

* 확인기준 내용 :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 공정 등

이에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및 성능과 직접생산 확인방법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둘째, 직접생산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근 직접생산 확인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도 위반 사례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 업체수의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 직접생산 확인업체(개) : ('08)16,167→('09)21,512→('10)21,432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대규모(1,000개 이상)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도 위반을 사전에 차단한다.

셋째, 실태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실태조사 업무의 조합 위탁에 대해 비조합 업체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대체 평가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을 중앙회가 직접 임명 · 관리하여 조합과 비조합 업체간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 (현행)중기청→중앙회→조합→조사원, (개편)중기청→중앙회→조사원

또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조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넷째, 실태조사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일부 실태조사원의 경우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피평가자로부터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실태조사원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신청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 자격시험 주요내용 : 공공구매제도, 국가계약법, 중소기업기본법, 조사 수칙 등

다섯째, 실태조사원 수당을 현실화한다.

전문 조사원 양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당 지급이 필요하나 현행 실태조사원 수당은 R&D 평가위원의 30% 수준으로, 실태조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사원 수당을 R&D 평가위원 수당의 최소 50%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 (현행) 10만원 수준 → (개편) 15만원 수준(R&D 평가위원은 약 30만원)

여섯째, 수수료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60.3%)가 발급기간 개선 등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바,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 강화와 불필요한 신청 억제를 위해 수수료 부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현행) 14일이내 → (개편) 10일 이내

중소기업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관련 업계에 대한 의견 조회, 직접생산 확인 관련 실태조사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 향후에도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방지"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미스코, 일본의 유수업체인 교와(協和)단보루에 자동가이드(WACS)와 롤 자동 센터링 장치(ZRC) 성공리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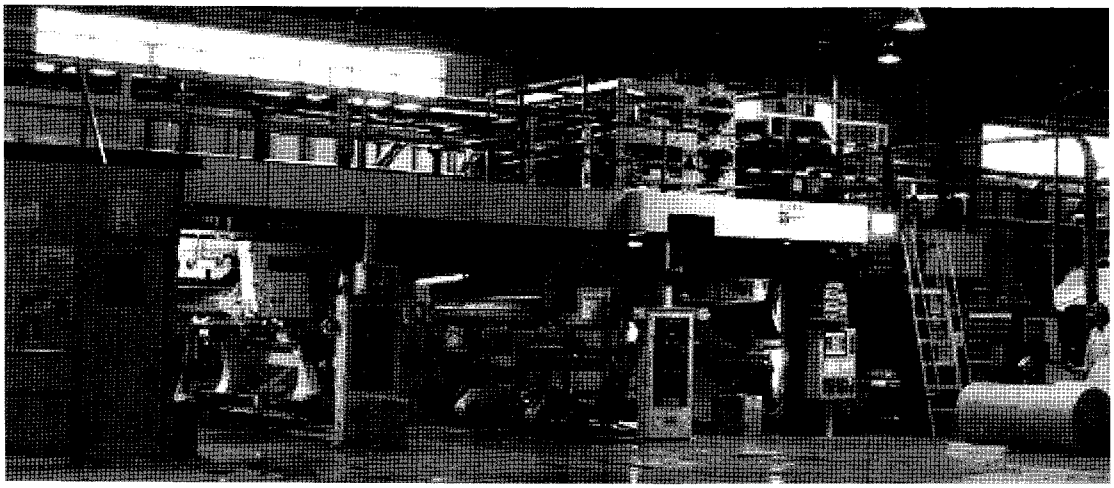

(일본 교와 단보루 설치 전경)

(주)제미스코(대표이사 이윤백)는 지난 2011년 6월초 일본 기후현에 위치한 골판지제조업체인 '協和ダソボール株式会社 (쿄와단보루 : KYOWA DANBORU)' 공장에 ㈜제미스코의 신형 브릿지 가이드 'WACS'와 자동롤 센터링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번에 설치한 기계는 지난 2010년 말 동경에 위치한 '㈜미스즈시교(美鈴紙業) 동경사업부'의 브릿지 가이드 및 롤 센터링 장치 설치에 이은 일본 내 3번째 설치로 까다롭기로 잘 알려진 일본시장에서 ㈜제미스코가 개발한 브릿지 가이드 제품을 확실하게 인정받은 셈이다.

특히, 교와단보루는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일본의 톱 수준에 이르는 기업으로 평균 롯트(LOT)교체가 시간당 20~25회이며 월 평균속도는 230mpm에 이르며 작업스타일도 한국과 비슷하여 많은 한국의 업체들에게 귀감이 되는 업체로써 이 회사가 (주)제미스코의 제품을 선택한 것은 ㈜제미스코가 앞으로 일본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와단보루는 WACS 외에 밀 롤 스탠드에 롤을 자동으로 원하는 위치에 장착할 수 있는 롤 자동 센터링 장치(WRC)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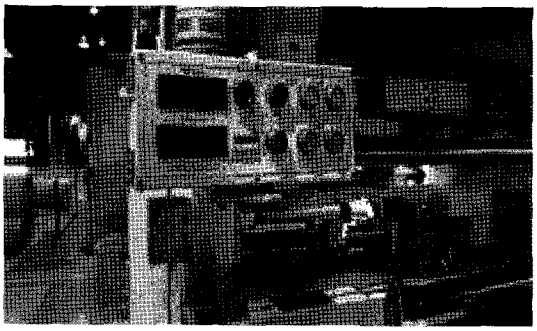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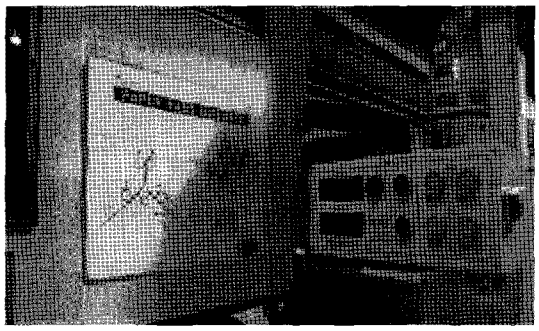

Roll Centering Device (WRC)

장치는 브릿지 가이드와 연동하여 원단과 표면지를 정렬해 주며 또 슬리터/스코어러에 정렬을 하므로 슬리터/스코어러를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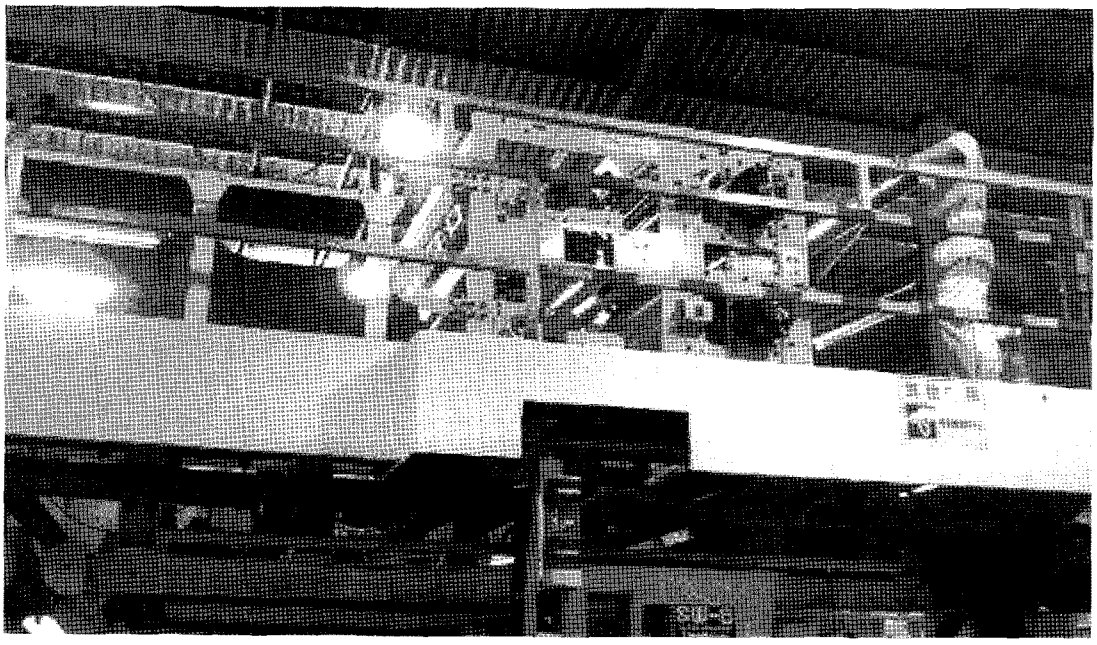

(브릿지 시스템 WACS 를 살펴보고 있는 시호하마 공장장)

(주)제미스코의 영업 담당자인 박군국 과장은 "유럽의 유수한 업체의 카메라나 센서 타입의 브릿지 가이드 시스템이 맥을 못 추고 있으며, 유난히 기계의 품질에 까다로운 일본시장에서 ㈜제미스코가 벌써 4차 및 5차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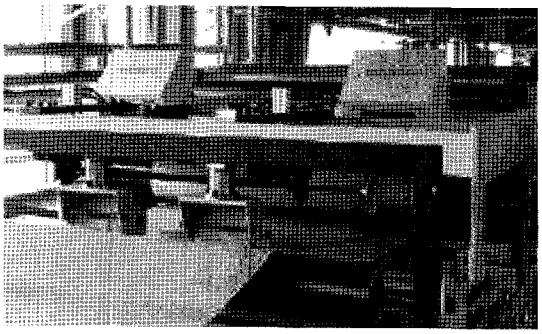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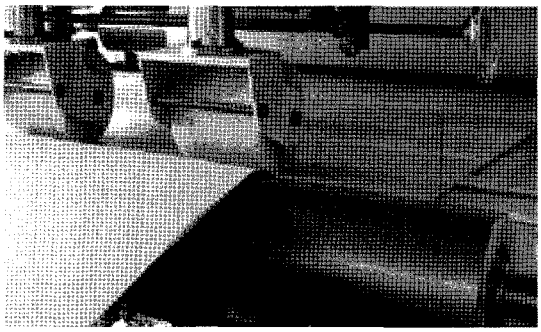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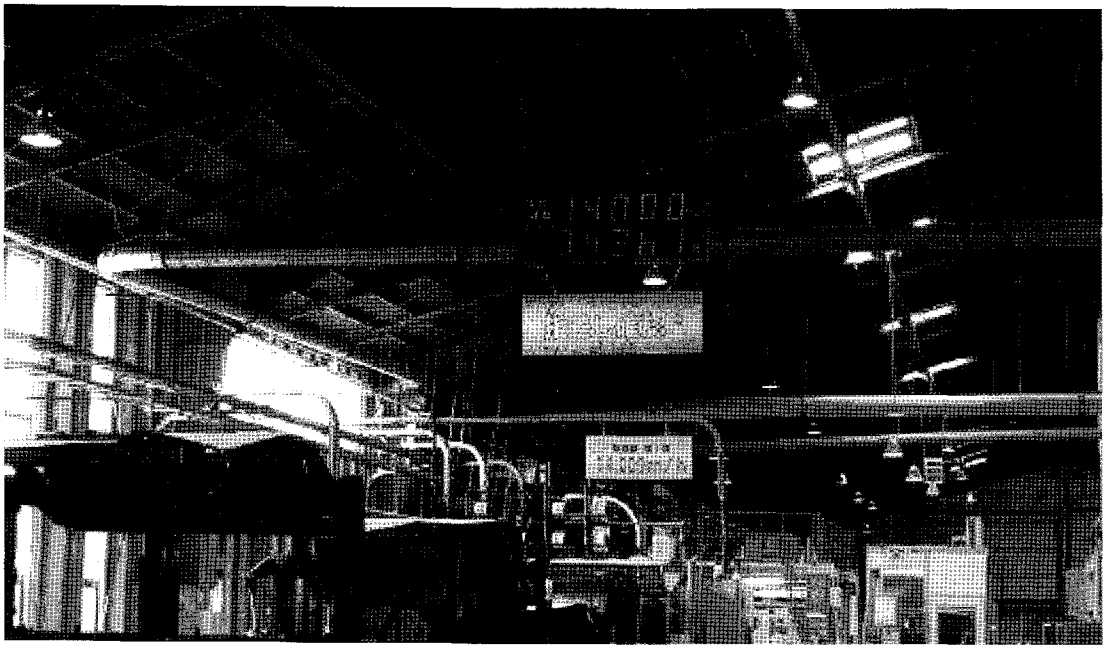

(평균속도 233mpm으로 가동중인 모습)